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9
----------	-----

제출년월일 : 2014. 2.

제 출 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주민의 분납이자율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정하도록 함.(안 제35조, 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안 제63조, 안 제63조의2)
  -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연 6퍼센트 ⇒ 연4퍼센트 인하
  -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연 4퍼센트 신설
- 나. 임산물 재배 등 임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요율을 정하였음.(안 제28조)
  - 대부요율 1,000분의 50 → 1,000분의 10
- 다. 건물대부시 건물공용면적 산출산식을 공식화로 변경하였음.(안 제31조)
- 라.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 하도록 함.(안 제40조)
  - 주택 매각기준일 : 1989년 1월 24일 → 2003년 12월 31일
  - 건축면적이 건폐율에 미달할 때 건폐율의 면적범위 내로 변경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정비 및 맞춤법을 교정하였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4. 1. 28. ~ 2014. 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944, 2014. 1. 24)

-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연결조문 용어, 맞춤법 등 정비 권고

(3) 사전규제심사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1599, 2014. 2. 17)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주민생활지원과-6982, 2014. 1. 29)

(5)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1】**

(6)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2】**

【별첨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제5조제1항제6호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관리위탁 행정 재산 기간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 는”을 “때에는 그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도로, 하천”을 “사업(도로, 하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부인”을 “기부 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수익허가대 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무상사용기간)”을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용도폐지”

를 “용도 폐지”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는 군과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

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관리위탁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1조”를 “영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탁자가”를 “관리수탁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재산인지의 여부 판단”을 “행정재산 여부”로 한다.

제2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부목적”을 “대부 목적”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 중 “제3항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도”를 “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부목적”을 “대부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용·공공용”을 “행정목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의 제목“(채광물채취료 등)”을“(광물채취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광물 채취료”를 “광물채취료”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자료”를 “결정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0이상”을 “50 이상”으로, “채광물채취료”를 “광물채취료”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불명확하여”를 “명확하지 않아”로, “불가”를 “불가능”으로, “산출(이하 같다)”을 “산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해당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면적 ×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3조제3항 후단 중 “예금중도 해지”를 “예금 중도해지”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계약일로부터”를 “계약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중 “보관함으로써”를 “보관하여”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퍼센트”를 “4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5퍼센트”를 “4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가.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가목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제2항 중 “우선 순위”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추진하는 때”를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제50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2조 단서 중 “1급·2급”을 “1급·2급”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하“사용자””를 “공무원(이하 “사용자””로 한다.

제54조 중 “비치정리한다”를 “비치·정리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한다.

제58조 중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관리하여야”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계하는”을 “인계할”로 한다.

제60조 중 “인하여파괴”를 “인하여 파괴”로, “망실 또는 훼손한 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를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은닉재산”을 “따른 은닉 재산”으로, “보상률”을 “보상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자인”을 “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은닉재산”을 “은닉 재산”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5. <u>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 상 대부</u></p> <p>6.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u>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u></p> <p>7. (생 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 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u>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 산 취득 · 처분</u></p> <p>4. 다음 각 목의 <u>행정재산의 용 도변경이나 용도폐지</u> 가. ~ 다. (생 략)</p> <p>제8조(실태조사) ① · ② (생 략)</p> <p>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 상대부</u></p> <p>6. ----- <u>관리 위탁 행정재산 기간갱신</u>----- -----</p> <p>7.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 는 대장가액 --</u></p> <p>4. ----- <u>공유재산</u>----- ----- 가. ~ 다. (현행과 같음)</p> <p>제8조(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  
각 및 대부시에 특별히 유의하  
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  
기 위해 확보할 가치가 있다  
고 인정되는 재산

2. ~ 5. (생략)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  
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  
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  
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  
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  
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생  
략)

-----  
-----  
-----  
-----  
-----.

1. -----  
-- 위하여 -----  
-----

2. ~ 5. (현행과 같음)

④ -----  
----- 때에는 그에 -  
-----  
-----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  
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  
-----  
- 사업(도로, 하천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현  
행과 같음)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생략)

제17조(무상사용기간)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  
----- 기부인-----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무상사용 기간)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  
-----  
----- 허가 시-----  
-----.

② -----  
-----  
-----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용도 폐지-----  
-----

2.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는 군과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

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을 준용하

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  
- 사용·수익허가부-----  
-----  
-----  
-----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  
-----  
-----  
--- 영 제19조-----  
-----  
-----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  
관리수탁자-----  
-----  
-----  
-----  
-----  
-----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③ ----- 관리수탁자-----  
-----  
-----



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

----- 관리수탁자가 -----.

④ ----- 관리수탁자 ----- 필요한 -----.

⑤ ----- 관리수탁자 ----- 해당 -----.

⑥ ----- 내구연수 -----.

제22조의2(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 -----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인지의 여부 판단

2. ~ 5. (생략)

③ (생략)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 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  
-----  
-----.

1. ----- 행정재산 여부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그 밖의 -----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 대부 목적-----  
-----  
-----  
-----  
-----  
-----  
----- 그 밖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  
-----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 제3항-----  
-----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  
-----.

1.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  
----- 따-----  
-----  
-----  
-----  
-----  
-----  
-----  
-----  
-----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생략)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 6. (생략)

② -----  
-----  
-----  
-----  
-----.

1. ----- 대부목적-----  
-----

2. (현행과 같음)

③ -----  
-----  
----- 25 이상-----  
-----.

1. 행정목적-----  
-----

2. (현행과 같음)

3. -----.  
-----  
-----  
-----  
----- 10 이상-----  
-----.

④ -----  
-----  
----- 10 이상-----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광물채취료 등) ① -----  
-----  
-----  
----- 광물채취료 -----  
-----  
-----  
----- 50 이  
상-----.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결정 자료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50 이  
상-----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5. (생략)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 광물채취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  
-----  
-----  
-----.

--- 명확하지 않아 ---  
--- 불가능-----

--- 산출-----  
-----.

③ -----  
-- 해당 -----  
-----  
-----.

1. ~ 5. (현행과 같음)

④ -----  
-----  
-----  
-----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 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신 설>

<신 설>

---  
---  
--.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해당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면적 ×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생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1. 삭제 <2008. 10. 17>

2. 삭제 <2008. 10. 17>

3. 삭제 <2008. 10. 17>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예금 중도해지 -----  
-----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  
-----  
----- 10 이상 -----  
-----  
-----.

<삭 제>

<삭 제>

<삭 제>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  
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  
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  
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  
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  
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  
-----  
----- 계약일부

터-----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  
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7조(대부계약서) -----

-----  
-----  
- 보관하여-----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분할 납부하게

-----.

1. ~ 4. (생략)

<신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삭제>

③ -----  
-----  
-----  
4퍼센트----- 분할 납  
부하게 -----  
-----.

1. ~ 3.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  
-----  
----- 해당 -----  
-----

④ -----  
-----  
----- 필요한 경우 -----  
-----  
-----  
-----  
----- 분할 납부하게 -----  
-----.

⑤ -----  
-----  
-----  
-----  
-----  
----- 4퍼센트 -----

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

~~-----분할 납부하게-----~~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

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가.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일괄매각이 가능하다.)

나. 군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가. 2003년 12월 31일(「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가목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구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신청한 토지에 한한다.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가목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생략)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

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 2. (생략)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의사 숙소 및 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우선순위 -----  
-----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추진하는  
경우 -----  
-----.

제50조(정의) -----

----- 그 밖에  
-----  
-----  
-----.

제51조(관사의 구분) -----

-----.

1. 2. (현행과 같음)

3. -----  
----- 그 밖의 -----

제52조(사용허가) -----

-----  
-----  
-----  
----- 1급  
·2급 -----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 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기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 8. (생략)

-----.

제53조(사용책임) -----  
공무원(이하 “사용자”-----

-.

1. ~ 4. (현행과 같음)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  
-----  
----- 비치·정리  
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1. -----  
-----  
----- 에어콘 -----  
-----

2. ~ 8. (현행과 같음)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 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제58조(비품의 관리) -----  
-----  
-----  
----- 등재·관  
리하여야 -.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계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변상조치) -----  
-----  
-- 인하여 파괴 -----  
-----  
-----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  
우-----.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  
-----

·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면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  
-----  
-----.

② -----  
----- 규칙에서 -----  
-----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분할 납부-----  
-----.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 4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달 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

환가산금의 이자는 연 4퍼센트  
로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따른 은닉 재산 -----  
보상율-----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자의 -----  
-----.

④ 은닉 재산-----  
-----  
----- 아니  
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해  
당 -----

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  
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  
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  
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  
뢰한다.

-----.  
해당 -----  
-----  
-----  
-----  
-----  
-----  
-----  
-----  
-----  
-----.

【별첨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최원규
연락처	(033) 330-2270

#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17. (생략)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 **제14조(사용료)** ① ~ ⑤ (생략)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생략)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연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①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1.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부료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 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 스키장용·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